

연장보육 이용 신청서(어린이집 제출용)

아동성명		생년월일	20 년 월 일
------	--	------	-------------------

1. 다음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에 표기해 주십시오.

취업	임금근로자(주 15시간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시간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영업자/특수형태근로자 <input type="checkbox"/>
구직·학업	구직/취업준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무급가족종사자 <input type="checkbox"/>
가정	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손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층 <input type="checkbox"/>
장애·건강	장애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요양/산정특례 <input type="checkbox"/> 입원/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신/유산 <input type="checkbox"/>
장기부재	군복무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역 <input type="checkbox"/>
기타	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

2. 예상되는 하원시간에 표기해 주십시오.

17:00~17:30 17:30~18:00 18:00~18:30 18:30~19:00 19:00~19:30

3. 주의사항

- 17시 이후에 월 10시간 미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육의 이용을 권고합니다.
- 보호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과의 상담 하에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online.bokjiro.go.kr)를 통하여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해야 합니다.
- 보호자가 연장보육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이용중단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online.bokjiro.go.kr)를 통하여 지원자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연장보육 이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 _____

아동과의 관계 : _____

어린이집원장 귀하